
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특수건강검진 대상 분야 및 검진항목 변경에 따른 수검 철저 이행

1. 관련근거

- 가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(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)
- 나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3 (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)
- 다. 보건환경지원처-4587호(2016.12.28) 『2016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

용역 결과 보고』

- 라. 보건환경지원처-557호(2017.2.20) 『2017년 특수검진 대상 분야 및 항목 변경 시행』

2. 2016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건강검진 대상 분야 및 항목을 변경 시행하오니, 해당소속 및 대상자는 수검에 만전을 기하여 미 이행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검진주기

(1)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업무 배치후 6개월이내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(유해인자 야간작업 해당) 실시

(2)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마다 실시

※ 특수건강검진 실시주기에 맞춰 일반건강검진 병행 실시

나. 검진항목 : 별첨1 참조

라. 검진기관 : 서울의료원 등 10개 기관 12개소 (2017년도 검진기관 선정시 변경 가능)

3. 행정사항

가. 해당소속

(1) 「배치전 특수검진」 요청 : 해당분야 본사(본사 소재 현업 포함) 근무자를 각 분야 작업공정별 대상 유해인자 대상 작업에 배치시 : **전보(소내)배치 5~7일전에 보건환경지원처로 문서로 요청**

(2) 검진결과 적합여부 확정 전까지 해당 업무 배치 지양

나. 검진대상 직원

(1) 특수건강검진 수검 철저 이행 : 미 수검시 과태료 부과

(2) 검진시 검진항목에 따라 공복유지, 금주, 금연(24H), 객담 등이 필요

- 유의사항 숙지 후 수검

붙임 1. 각 분야 작업공정별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1부. 끝.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

수신자 나1~나43, 다1~다52, 라1~라4

차장 윤신애

차장 02/20
김재신

협조자

시행 보건환경지원처-559 (2017.02.20.)

접수 부대사업처-642 (2017.02.21.)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
전화 02-6311-2096 전송 / pooya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